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임재범

- 01 I. 들어가며
- 03 II.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및 금융 투자소득 과세제도
- 07 III.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및 자본이득 과세제도
- 16 IV. 시사점

요약

□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는 2020년 12월 도입되어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세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1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2023년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예정임

-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임
- 시행을 앞둔 현재 가상자산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기본공제 250만원의 적정성, 가상자산 손익통산 범위,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여부 등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에 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및 금융상품 양도소득 과세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의 시사점을 도출함

-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점에서 일본과 유사하지만, 세율을 금융투자소득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서 일본과 달리 중과세하고 있지 않음
-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금융투자소득과의 과세형평상 2023년부터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할 필요가 있으나,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되 기본공제 250만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I. 들어가며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는데,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등은 제외된다.¹⁾ 즉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내지 암호자산(crypto assets)이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자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017년 9월 거래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 가상자산 대응방향을 발표했다.²⁾ 그리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의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등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2020년 3월 위와 같이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거래내역 구분관리 조치, 특정 거래 보고의무, 고객 확인의무,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무(Travel rule) 등을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1. 3. 25. 시행되었다.

당시 영업 중이던 가상자산사업자³⁾ 및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정보보호 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할 수 있다.⁴⁾ 현재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34개사로, 원화 등 금전과 가상자산의 거래가 가능한 원화마켓 거래업자 5개사⁵⁾, 가상자산 간의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 거래업자 21개사, 가상자산 지갑서비스 및 보관 관리업자 8개사이다.⁶⁾

2021년 12월말 기준 가상자산사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는 1,525만명, 실제 이용자는 558만명인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는 30대(174만명, 31%), 40대(148만명, 27%)이다. 2021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총 55조 2천억원이며,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종류는 623종이고, 2021년 하반기 일평균 거래액은 11조 3천억원으로 상당한 규모이며, 가상자산의 가격변동성(Max Draw Down)⁷⁾은 65%로 매우 큰 수준이다.⁸⁾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개최 -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 2017. 9. 4.

3) 당시 영업 중이던 42개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 9. 24. 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였는데, 29개사는 신고 수리, 5개사는 유보·재심사 결정, 8개사는 신고를 자진 철회하였고, 신고가 수리된 29개사는 원화마켓 거래업자 4개사, 코인마켓 거래업자 20개사, 가상자산 지갑서비스 및 보관 관리업자 5개사였음(금융위원회 보도자료,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결과」, 2021. 12. 24.)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5) 원화마켓 거래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 등을 수행하는 등 요건을 구비해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될 수 있는데, 현재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로 업비트(두나무 주식회사), 코빗(주식회사 코빗), 코인원(주식회사 코인원), 빗썸(주식회사 빗썸코리아), 고팍스(주식회사 스트리미)가 있음

6)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2022.04.28. 기준)」 (최종 검색일 : 2022.5.3.) <<https://www.kofiu.go.kr/kor/notification/notice.do>>

7) 2021년 하반기 동안 개별 가상자산 가격의 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최고가-최저가)÷최고가]을 의미함(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2021년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⁹⁾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입되었고,¹⁰⁾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1년 5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 및 과세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유예 등에 대한 4건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¹¹⁾ 2021. 12. 8. 「소득세법」 개정으로 1년간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시행이 유예되어 2023년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다.¹²⁾

그런데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즉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가상자산 소득의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적용할지 아니면 국내 상장주식 등 양도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와 동일하게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손실 또는 이익을 다른 금융투자손익 등과 통산(通算)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금융투자결손금과 마찬가지로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분류와 과세방식, 세율, 손익통산 범위,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여부, 비과세 기준금액 및 가상자산의 채굴, 하드포크(hard fork)¹³⁾, 에어드랍(airdrop)¹⁴⁾에 대한 과세처리 등을 분석한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주식 등 금융상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함께 비교하여 조세 목적상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상품 양도소득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이에 앞서 2023년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와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를 살펴본다.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p.6, 2022. 2.)

8)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보도자료, 「21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2. 3. 2.

9)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지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원천별로 별개로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분류과세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함

10)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제64조의3제2항

11) 윤창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10077, 2021. 5. 12.), 유경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10127, 2021. 5. 14.), 노용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11370, 2021. 7. 6.), 조명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12832, 2021. 10. 13.)

12)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 부칙(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제1조제2호

13) 하드포크는 프로토콜 코드를 변경하여 새로운 버전의 블록체인을 생성함으로써 수정된 프로토콜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새로운 토큰(가상자산)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드포크 후에도 기존 토큰은 기존 프로토콜에 따라 계속 작동함. 하드포크 사례로는 비트코인이 2017년 7월 비트코인캐시 토큰을 생성한 것이 있음(OECD, *Taxing Virtual Currencies: An Overview of Tax Treatments and Emerging Tax Policy Issues*, p.15, 2020.)

14) 에어드랍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자에게 무상으로 토큰(가상자산)을 배분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토큰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새로운 토큰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행됨(OECD, *Taxing Virtual Currencies: An Overview of Tax Treatments and Emerging Tax Policy Issues*, p.13, 2020.)

II.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및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1.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을 원칙적으로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¹⁵⁾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분리과세하는데,¹⁶⁾ 가상자산 양도·대여의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공제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결정세액으로 하여 과세하고,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¹⁷⁾¹⁸⁾ 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¹⁹⁾

가상자산소득의 과세기간은 1년으로 가상자산을 여러 차례 양도·대여하여 손실과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계산하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²⁰⁾ 즉 우리나라 거주자²¹⁾는 2023년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4년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²²⁾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손실이 이익을 초과하여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월하여 가상자산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거주자²³⁾의 경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여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데, 가상자산 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²⁴⁾ 원천징수대상 금액은

15)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가상통화를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밝혔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IC Update June 2019: Holdings of Cryptocurrencies", Agenda Paper 12, 2019.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의 분류도 동일함(한국회계기준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의 분류」, K-IFRS 질의회신 요약(2019-I-KQA017), 2019. 12. 31.)

16)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pp.43~44, 2020. 7. 22.

1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제21조제3항, 제37조제1항제3호, 제64조의3제2항, 제84조제3호

18)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 이동평균법을, 그 밖의 경우 선입선출법을 각 적용하여 가상자산주소별로 계산하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가상자산주소란 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함(「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

19) 가상자산 교환거래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은 가상자산 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함(「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20) 「소득세법」 제5조제1항, 제70조제2항, 제70조제1항

2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22) 만약 2023년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그 취득가액을 2022. 12. 31.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여 가상자산 소득금액을 계산함(「소득세법」 제37조제5항)

23)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

24)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타목, 제126조제1항제3호, 제156조제16항

가상자산소득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인출로 인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가상자산소득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고,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대여·인출로 인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다.²⁵⁾

표 1 | 우리나라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 구분 | 과세대상 가상자산소득 | 세율 | 과세방식 |
|------|--------------|--------------------------------|------|
| 거주자 | 양도, 대여, 교환 등 | 20% | 분리과세 |
| 비거주자 | 양도, 대여, 인출 등 | Min[지급금액×10%, (수입금액-필요경비)×20%] | 원천징수 |

※ 주: 1. 가상자산소득이 연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아니함(「소득세법」 제84조제3호)
 2.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수리,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의무(트래블 룰), 과세자료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의무를 각 규정하였음
 ※ 자료: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저자 작성

가상자산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세 신고내용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원천징수의무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무신고·과소신고 또는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시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한 자에게 그 소득을 원화 등으로 지급한 내역, 가상자산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가상자산 취득가액, 가상자산을 보유한 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원화 등 금전과 가상자산의 교환이 가능한 원화마켓의 경우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²⁶⁾을 통해 금융거래 등을 해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²⁷⁾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²⁸⁾

또한 가상자산 이전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트래블 룰) 규정을 2020. 3. 24. 신설하였고, 관련 업계의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작업을 거쳐 2022. 3. 25.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²⁹⁾ 즉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의 성명과 가상자산주소를 제공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 송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며,³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25)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26) 동일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함(「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29)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보도자료, 「3.25일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이 시행됩니다.」, 2022. 3. 25.
 3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5조의3,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0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³¹⁾

그리고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023년부터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인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가상자산 거래 집계표를 거래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³²⁾ 또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인출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³³⁾

더불어 2020. 12. 22.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2022년부터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의무를 부과하였는데, 국외에 소재하는 가상자산사업자 등과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 가상자산 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³⁴⁾ 해외 가상자산 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각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³⁵⁾

2.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20%, 3억원 초과이면 25%의 누진세율로 분류과세하는 내용으로 금융세제를 개편하여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³⁶⁾ 현재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상장 주식인지, 양도인이 대주주인지 등에 따라 일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고 있으나, 금융세제 개편에 따라 2023년부터 국내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 경비와 5천만원의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은 주식 등³⁷⁾, 채권 등³⁸⁾, 투자계약증권의 각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으로 발생한 이익과 적격집합투자기구

3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항제3호, 제20조제2항제3호

32) 「소득세법」 제164조의4,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의4호

33) 「소득세법」 제16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2제1항, 제3항

3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3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36)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2의2호, 제87조의6, 제87조의4, 제87조의19

37) 주식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9조 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조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말함(「소득세법」 제87조의2제1호)

38) 채권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같은 조 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채무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소득세법」 제87조의2제2호)

로부터의 이익 중 일정한 분배금,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이다.³⁹⁾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위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만약 금융투자소득 금액이 0보다 작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⁴⁰⁾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주식 관련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는 5천만원을, 그 밖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는 250만원을 각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⁴¹⁾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방식은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20%의 세율로 반기별 원천징수하고,⁴²⁾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⁴³⁾ 만약 25%의 누진세율 적용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자 등은 다음 연도 5월에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⁴⁴⁾

표 2 | 우리나라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 세율 | 과세표준 | 과세대상 | 손익통산 | 결손금 이월공제 |
|-----|--------|---|-----------|----------|
| 20% | 3억원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양도 | 금융투자 소득 간 | 5년 |
| 25% | 3억원 초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으로 발생한 이익 -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일정한 분배금 -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파생상품의 거래·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 | |

※ 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주식 관련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는 5천만원을, 그 밖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는 250만원임
 ※ 자료: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저자 작성

39) 「소득세법」 제87조의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 제150조의7

40) 「소득세법」 제87조의7 내지 제87조의17, 제87조의4제2항제1호

41) 상장주식 장내거래, 중소 중견기업의 비상장주식 K-OTC 거래,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5천만원을, 채권·파생상품 거래 등 국내 주식 이외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250만원을 각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음(「소득세법」 제87조의18, 동법 시행령 제150조의24 내지 제150조의26)

42)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회사 등이 반기마다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9호, 제128조, 제1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4조의5)

43)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각 지급받은 자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함(「소득세법」 제87조의21, 제87조의22, 동법 시행령 제150조의27)

44) 만약 25%의 누진세율 적용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자, 손익통산으로 환급을 받으려는 자 및 당해 연도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함(「소득세법」 제87조의23, 제84조의24, 동법 시행령 제150조의30, 제150조의31)

Ⅲ.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및 자본이득 과세제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과세제도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2021년 11월 기준 131개국 중 가상자산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국가는 중국, 이집트 등 9개국이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암시적인 금지(implicit bans)를 하는 국가는 터키, 베트남 등 42개국이다.⁴⁵⁾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112개국 중 65개국이며, 그중 61개국이 과세제도와 함께 가상자산 등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 금지법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Financing of Terrorism Laws)」을 적용하고 있다.⁴⁶⁾ OECD 38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37개국이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도입하였고, 35개국이 가상자산 등에 대하여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 금지법을 적용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와 함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규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해외 주요국 중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의 가상자산⁴⁷⁾ 소득과세 제도를 분석하고, 주식 등 금융상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함께 비교하여 조세 목적상 가상자산소득을 금융상품 양도소득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1. 미국

미국은 포괄주의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에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를 과세하는 내용의 입법을 별도로 하지 않고, 2014년 4월 국세청 지침(IRS Notice 2014-21) 등을 통해 비트코인 등 법정화폐로 전환이 가능한 가상화폐(convertible virtual currency)가 자산(property)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즉 미국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경우 다른 자본자산⁴⁸⁾ 처분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부과한다.⁴⁹⁾ 다만, 사업 목적으로 보유하는 가상화폐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10%~37%의 세율로 종합과세한다.⁵⁰⁾

45) The Law Library of Congress, Global Legal Research Directorate, *Regulation of Cryptocurrency Around the World: November 2021 Update*, p.1, 2021.

46) Ibid. pp.1~62

47)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사용하는 용어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기재함. 즉 미국은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영국은 암호자산(cryptoassets), 독일은 암호자산(kryptowerte), 호주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 일본은 암호자산(暗号資産)임

48) 자본자산(capital asset)은 납세자가 보유한 자산으로서 개인용 자산과 주식, 채권 등 투자자산(investment property) 등을 포함함(미국 「내국 세법(IRC)」 제1221조)

49) 가상화폐의 전환 가능성을 기준으로 자산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므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은 유틸리티형 토큰(utility token) 및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신상화·홍성화·정훈, 「암호화폐 과세제도 및 과세인프라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p.34~35, 2018.), 전환이 가능한 유틸리티형 토큰 및 증권형 토큰은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최정희, 「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법학논집 제25권 제2호, pp.78~79, 2020.)

미국의 자본이득세는 처분한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단기자본이득으로서 10%~37%의 세율이 적용되고 다른 경상소득(ordinary income)과 함께 종합과세된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장기자본이득으로서 더욱 높은 금액의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15% 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다른 소득과 분류과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아진다.

표 3 | 미국 2022년 단기자본이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

(단위: 달러)

| 세율 | 과세표준 | | | |
|-----|-------------------|-------------------|-------------------|-------------------|
| | 개인 | 부부별도 | 부부합산 | 세대주 |
| 10% | 10,275 이하 | 10,275 이하 | 20,550 이하 | 14,650 이하 |
| 12% | 10,276 ~ 41,775 | 10,276 ~ 41,775 | 20,551 ~ 83,550 | 14,651 ~ 55,900 |
| 22% | 41,776 ~ 89,075 | 41,776 ~ 89,075 | 83,551 ~ 178,150 | 55,901 ~ 89,050 |
| 24% | 89,076 ~ 170,050 | 89,076 ~ 170,050 | 178,151 ~ 340,100 | 89,051 ~ 170,050 |
| 32% | 170,051 ~ 215,950 | 170,051 ~ 215,950 | 340,101 ~ 431,900 | 170,051 ~ 215,950 |
| 35% | 215,951 ~ 539,900 | 215,951 ~ 323,925 | 431,901 ~ 647,850 | 215,951 ~ 539,900 |
| 37% | 539,901 이상 | 323,926 이상 | 647,851 이상 | 539,901 이상 |

※ 주: 1. 미국은 개인(unmarried individuals), 부부별도, 부부합산, 세대주(heads of households), 적격 미망인(qualifying widow)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적격 미망인의 경우 부부합산 신고와 과세표준과 세율이 동일함

2.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서 총소득에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인적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인데, 2022년 표준공제액은 개인과 부부별도는 12,950달러, 부부합산은 25,900달러, 세대주는 19,400달러임

※ 자료: IRS Revenue Procedure 2021-45, Section 3. Tax Rate Tables

표 4 | 미국 2022년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자본이득세율

(단위: 달러)

| 세율 | 과세표준 | | | |
|-----|------------------|------------------|------------------|------------------|
| | 개인 | 부부별도 | 부부합산 | 세대주 |
| 0% | 41,675 이하 | 41,675 이하 | 83,350 이하 | 55,800 이하 |
| 15% | 41,676 ~ 459,750 | 41,676 ~ 258,600 | 83,351 ~ 517,200 | 55,801 ~ 488,500 |
| 20% | 459,751 이상 | 258,601 이상 | 517,201 이상 | 488,501 이상 |

※ 자료: IRS Revenue Procedure 2021-45, Section 3. Maximum Capital Gains Rate

가상자산 등 자본자산을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자본이득과 통산하고, 자본이득을 초과하는 순자본손실에 대하여는 연간 3,000달러(부부별도 신고인 경우 1,500달러)를 한도로 경상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⁵¹⁾ 만약 순자본손실이 연간 3,000달러의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할 수 있는데, 그 손실의 장기·단기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순자본이득(net capital gain)을 계산한다.

50) 미국 국세청(IRS), "IRS Notice 2014-21", pp.3-4, 2014.

51) 미국 국세청(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Publication 550, p.66, 2021.

개인이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점의 가상화폐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경상소득으로 보아 10%~37%의 세율로 종합과세한다. 사업적으로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하고, 채굴 수입이 400달러 이상이면 자영업소득(self-employment income)에도 해당하여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로 사회보장세 12.4%와 의료보장세 2.9%를 부과한다.⁵²⁾

미국 국세청 통칙(Revenue Ruling) 2019-24에 따르면, 하드포크를 통해 가상화폐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점의 가상화폐 공정시장가치를 경상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하고, 에어드랍으로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하드포크가 이뤄졌으나 새로운 가상화폐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⁵³⁾

또한 미국은 2013년부터 개인 등이 순투자소득(Net Investment Income)이 있고 수정 조정 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연간 기준금액(개인 및 세대주는 20만달러, 부부별도는 12만 5천달러, 부부합산 및 적격 미망인은 25만달러)을 초과하는 경우 순투자소득과 위 기준금액을 초과한 수정 조정총소득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3.8%의 순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를 부과하고 있다.⁵⁴⁾ 개인이 가상화폐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고, 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수정 조정총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활동으로 가상화폐를 양도한 것이 아닌 이상 순투자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영국

영국은 암호자산(cryptoassets)을 과세하는 규정을 달리 입법하지 아니하고 2018년 12월 개인의 암호자산 취득, 보유 및 양도에 관한 조세 처리를 정한 국세청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고,⁵⁵⁾ 지속적으로 암호자산 관련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있다.⁵⁶⁾ 영국은 암호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서 무형자산으로 보아 개인이 암호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과세한다.⁵⁷⁾ 만약 개인의 암호자산 거래가 금융거래(financial trade) 사업으로서 수행된 경우에는 그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20%~45%의 세율로 종합과세한다.⁵⁸⁾

52) 미국 국세청(IRS), "IRS Notice 2014-21", p.4, 2014.; 미국 국세청(IRS), "Self-Employment Tax(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최종 검색일 : 2022.5.3.)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elf-employment-tax-social-security-and-medicare-taxes>>

53) 미국 국세청(IRS), "Revenue Ruling 2019-24" (최종 검색일 : 2022.5.3.) <<https://www.irs.gov/pub/irs-drop/rr-19-24.pdf>>

54) 미국 「내국세법(IRC)」 제1411조; IRS, *Instructions for Form 8960, Net Investment Income Tax Individuals, Estates, and Trusts*, 2021.

55) 영국 국세청(HMRC), *Policy Paper: Cryptoassets for Individuals*, Dec 19, 2018.

56) 영국 국세청(HMRC), "HMRC internal manual: Cryptoassets Manual", Feb 22, 2022. (최종 검색일 : 2022.5.3.)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

57) OECD, *Taxing Virtual Currencies: An Overview of Tax Treatments and Emerging Tax Policy Issues*, p.23, 2020.

58) 영국 국세청(HMRC), "HMRC internal manual: Cryptoassets Manual, what is trading", (최종 검색일 : 2022.5.3.)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20250>>

영국의 자본이득세는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을 처분하여 과세대상 자본이득(chargeable gain)이 발생한 경우 과세하는데, 자본이득세율은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즉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자본이득을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의 기본세율 구간 내이면 10%, 기본세율 구간을 초과(고세율 구간 이상)하면 20%의 자본이득세율을 적용한다.⁵⁹⁾ 개인의 자본이득이 연간면제금액(Annual Exempt Amount) 12,300파운드(2021~2022년 기준) 이하이면 자본이득세 과세를 면제한다. 당해 연도 자본이득을 초과하는 순자본손실은 금액과 기간의 제한 없이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표 5 | 영국 2021년~2022년 개인 자본이득세율

(단위: 파운드)

| 세율 | 과세표준 | 비고 |
|-----|-------------------|----------------|
| 0% | 자본이득 12,300 이하 | 연간면제금액(AEA) 적용 |
| 10% | 종합소득 합산 37,700 이하 | 기본세율 구간 |
| 20% | 종합소득 합산 37,701 이상 | 고세율 구간 이상 |

※ 주: 1. 영국의 2021~2022년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12,571~50,270파운드인 경우 20%의 기본세율(Basic rate), 50,271~150,000파운드인 경우 40%의 고세율(Higher rate), 150,001파운드 이상인 경우 45%의 추가세율(Additional rate)로 구분됨
 2. 위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율 구간에서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12,570파운드를 차감한 금액임
 3. 영국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직전 연도 4월 6일부터 당해 연도 4월 5일까지임

※ 자료: HMRC, Income Tax rates and Personal Allowances

즉 개인이 암호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자본이득은 다른 자본이득과 합산하여 계산한 과세대상 자본이득이 연간면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자본이득세율 10% 또는 20%를 적용하여 자본이득세를 과세한다. 참고로 영국은 주식 취득시 0.5%의 인지세를 부과하는데, 영국 국세청에 따르면 현존하는 암호자산의 취득은 인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⁶⁰⁾

개인이 암호자산을 채굴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점의 암호자산 가치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45%의 세율로 종합과세하고,⁶¹⁾ 만약 상거래(trade)로 채굴하여 취득한 암호자산은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한다.

그러나 하드포크를 통해 암호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점에 과세하지 아니하고 향후 이를 양도할 때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⁶²⁾ 에어드랍으로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⁶³⁾ 다만,

59) 다만, 주택(residential property)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은 납세자가 기본세율 구간인 경우 18%, 고세율 구간 이상인 경우 28%가 적용됨
 60) 영국 국세청(HMRC), "HMRC internal manual: Cryptoassets Manual, Cryptoassets for individuals: Stamp Duty, Stamp Duty Reserve Tax and Stamp Duty Land Tax", (최종 검색일 : 2022.5.3.)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
 61) 영국 국세청(HMRC), "HMRC internal manual: Cryptoassets Manual, Mining transactions", (최종 검색일 : 2022.5.3.)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21150>>
 62) OECD, *Taxing Virtual Currencies: An Overview of Tax Treatments and Emerging Tax Policy Issues*, pp.43-44, 2020.

용역 제공 등의 대가 또는 상거래나 사업활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암호자산 취득시 과세한다.

3. 독일

독일은 암호자산(Kryptowerte)을 「금융법(Kreditwesengesetz)」상 결제단위(units of account)⁶⁴⁾로서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⁶⁵⁾ 개인이 암호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기타 경제재(anderen Wirtschaftsgütern)의 사적 양도거래(Private Veräußerungsgeschäfte)로 발생한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⁶⁶⁾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면서 600유로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0%~45%의 세율로 종합과세한다. 즉 개인이 양도한 암호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보유기간이 1년 이하라도 600유로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다.⁶⁷⁾ 다만, 개인이 상업적 활동으로 암호자산을 거래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한다.⁶⁸⁾

사적 양도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에서만 이를 공제할 수 있고, 당해 연도 기타소득을 초과하는 손실은 직전 연도로 소급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적 양도거래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⁶⁹⁾

통상적인 활동으로 암호자산을 채굴하여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그 소득이 256 유로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하며,⁷⁰⁾ 상업적인 활동으로 얻은 암호자산 관련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⁷¹⁾ 암호자산의 하드포크와 에어드랍과 관련한 과세방안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63) 영국 국세청(HMRC), "HMRC internal manual: Cryptoassets Manual, Airdrops", (최종 검색일 : 2022.5.3.)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21000>>

64) 결제단위는 외환과 법정통화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적 계약을 근거로 통화를 대체하는 형태의 교환거래에 지급수단으로 기능함(신상화·홍성화·정훈, 「암호화폐 과세제도 및 과세인프라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59, 2018.)

65) 독일 「금융법(Kreditwesengesetz)」 제1조제11항제10호

66) 독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제23조제1항제2호: 신상화·홍성화·정훈, 「암호화폐 과세제도 및 과세인프라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58, 2018.

67) 독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제23조제3항

68) 독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제15조

69) 독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제23조제3항

70) 독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제22조제3항

71) The Law Library of Congress, Global Legal Research Directorate, *Taxation of Cryptocurrency Block Rewards in Selected Jurisdictions*, pp.41~42, 2021.

| 표 6 | 독일 2022년 종합소득세율

(단위: 유로)

| 세율 | 과세표준 | |
|--------------|------------------|-------------------|
| | 개인 | 부부합산 |
| 0% | 9,984 이하 | 19,968 |
| 14% ~ 23.97% | 9,985 ~ 14,926 | 19,969 ~ 29,852 |
| 23.97% ~ 42% | 14,927 ~ 58,596 | 29,853 ~ 117,192 |
| 42% | 58,597 ~ 277,825 | 117,193 ~ 555,650 |
| 45% | 277,826 이상 | 555,651 이상 |

※ 주: 1. 과세표준이 개인 9,984유로, 부부합산 19,968유로 구간의 경우 기본공제(Grundfreibetrag) 적용으로 세율 0%임
 2. 세율 14%~42% 구간은 점진적인 누진율이 적용되는데, 14%~23.97% 구간은 세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23.97~42% 구간은 세율이 다소 완만하게 상승함. 세율 42% 및 45% 구간은 비례세율이 적용됨
 ※ 자료: 독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제32a조

한편 독일은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 자본자산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자본자산 소득(Einkünfte aus Kapitalvermögen)으로 보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25%의 자본자산소득세를 완납적 원천징수(Abgeltungsteuer)로 분리과세한다.⁷²⁾ 다만,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자본자산소득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개인이 회사 지분을 양도하기 전 5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1% 이상 보유 하던 경우에는 그 지분 양도소득은 자본자산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한다.

필요경비적 성격의 자본자산소득 공제로 개인은 801유로, 부부합산과세는 1,602유로를 일괄적으로 인정하며, 그 밖에 지출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⁷³⁾ 자본손실은 자본 이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데, 주식양도차손은 주식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반면 다른 금융자산 등에서 발생한 자본손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⁷⁴⁾ 다만, 납세자가 자본자산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을 자본자산 소득과 통산할 수 있다. 자본손실은 100만 유로(부부합산은 200만 유로)를 한도로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직전 연도에 한하여 소급공제할 수 있다.⁷⁵⁾

4. 호주

호주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를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자산(capital gain tax asset)으로 보아 개인이 암호화폐를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0%~45%의 세율로 자본이득세를 종합과세한다.⁷⁶⁾ 만약 개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를 처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72) 독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제20조, 제32d조, 제2조제5b항
 73) 독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제20조제9항
 74) 독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제20조제6항
 75) 독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제10d조제1항, 제2항
 76) 호주 국세청(ATO), "Transacting with cryptocurrency" (최종 검색일: 2022.5.3.) <<https://www.ato.gov.au/general/gen/tax-treatment->

순자본이익의 50%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만 과세한다(CGT discount).⁷⁷⁾ 즉 암호화폐를 다른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만약 개인이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암호화폐를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자본이득이 아닌 경상소득으로 보아 0%~45%의 세율로 종합과세한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짧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용 자산(personal use asset)⁷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개인용 자산으로서 1만 호주달러 미만으로 취득한 암호화폐를 처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⁷⁹⁾ 다만, 암호화폐를 투자, 이익창출 또는 사업활동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사용하면 개인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다.

호주는 채굴을 사업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채굴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즉 개인이 비사업적으로 채굴하여 취득한 암호화폐는 취득시점에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할 때 그 소득에 대하여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사업활동으로 채굴하여 취득한 암호화폐는 취득시점의 시가에서 채굴을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⁸⁰⁾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암호화폐의 하드포크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점에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할 때 그 소득(취득가액은 0으로 본다)에 대하여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사업활동 목적으로 보유한 암호화폐가 하드포크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판매하거나 교환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고자산(trading stock)으로 취급한다.⁸¹⁾ 에어드랍으로 취득한 암호화폐는 취득시점의 현금가치를 경상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한다.⁸²⁾

암호화폐 처분으로 인한 순자본손실은 기간 제한 없이 이월하여 자본이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개인용 자산에 해당하는 암호화폐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은 공제대상이 아니다.⁸³⁾ 다만, 자본손실 외의 다른 손실을 자본이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of-crypto-currencies-in-australia---specifically-bitcoin/?anchor=Transactingwithcryptocurrency#Transactingwithcryptocurrency)
77) 호주 국세청(ATO), "CGT discount", (최종 검색일 : 2022.5.3.) <<https://www.ato.gov.au/individuals/Capital-gains-tax/CGT-discount>>

78) 개인용 자산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보트, 가구,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이 있음

79) 호주 국세청(ATO), "Transacting with cryptocurrency: Personal use asset" (최종 검색일 : 2022.5.3.) <<https://www.ato.gov.au/general/gen/tax-treatment-of-crypto-currencies-in-australia---specifically-bitcoin/?anchor=Transactingwithcryptocurrency#personaluse>>

80) The Law Library of Congress, Global Legal Research Directorate, *Taxation of Cryptocurrency Block Rewards in Selected Jurisdictions*, p.11, 2021.

81) 호주 국세청(ATO), "Transacting with cryptocurrency: Chain splits" (최종 검색일 : 2022.5.3.) <<https://www.ato.gov.au/general/gen/tax-treatment-of-crypto-currencies-in-australia---specifically-bitcoin/?anchor=Transactingwithcryptocurrency#Chainsplits>>

82) 호주 국세청(ATO), "Transacting with cryptocurrency: Staking rewards and airdrops" (최종 검색일 : 2022.5.3.) <<https://www.ato.gov.au/general/gen/tax-treatment-of-crypto-currencies-in-australia---specifically-bitcoin/?anchor=Transactingwithcryptocurrency#Stakingrewardsandairdrops>>

83) 호주 국세청(ATO), "Using capital losses to reduce capital gains" (최종 검색일 : 2022.5.3.) <<https://www.ato.gov.au/individuals/Capital-gains-tax/Calculating-your-CGT/Using-capital-losses-to-reduce-capital-gains>>

표 7 | 호주 2021년~2022년 종합소득세율

(단위: 호주달러)

| 세율 | 과세표준 | 누진공제 |
|-------|-------------------|--------|
| 0% | 18,200 이하 | - |
| 19% | 18,201 ~ 45,000 | 3,458 |
| 32.5% | 45,001 ~ 120,000 | 9,533 |
| 37% | 120,001 ~ 180,000 | 14,933 |
| 45% | 180,001 이상 | 29,333 |

※ 주: 1. 저소득층 세액공제(Low income tax offset)로 0~700호주달러를 세액공제하는데, 즉 과세표준이 37,500호주달러 이하이면 700호주달러, 66,667호주달러까지 소득 증가액만큼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또한 중저소득층 세액공제(Low and middle income tax offset)로 420~1,500호주달러를 세액공제하는데, 즉 과세표준이 37,000호주달러 이하이면 675호주달러, 48,000호주달러까지 소득 증가액만큼 공제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 48,001~90,000호주달러인 경우 1,500호주달러, 90,001~126,000호주달러인 경우 소득 증가액만큼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며, 저소득층 세액공제와 함께 적용됨(호주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Subdivision 61-D)

2. 호주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임

※ 자료: 호주 「Income Tax Rates Act 1986」, Schedule 7. General rates of tax

5. 일본

일본은 암호자산(暗号資産)⁸⁴⁾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급결제수단 및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⁸⁵⁾ 개인이 암호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잡소득(雑所得)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45%의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참고로 소득할(所得割) 주민세 10% 및 부흥 특별소득세 2.1%가 함께 과세된다).⁸⁶⁾ 만약 개인이 암호자산 거래를 사업상 수행하는 경우에는 암호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한다. 잡소득은 사업소득, 양도 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소득으로서 포괄주의에 따라 과세하는 반면,⁸⁷⁾ 우리나라는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한하여 열거주의에 따라 과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⁸⁸⁾

개인이 암호자산을 채굴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점의 암호자산 시가에서 채굴을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잡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⁸⁹⁾ 물론 채굴을

84) 일본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제2조제5항은 암호자산을 정의하고 있는데, 암호자산이란 1. 물품의 구입·임차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불특정인에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불특정인과 매매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에 한하며 국내 통화, 외국통화 및 통화표시자산은 제외함)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 2.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제1호와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이전할 수 있는 것을 말함

85) 일본은 금융상품의 하나로 암호자산을 규정하였음(「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 제2조제24항제3의2호)

86) 일본 국세청(NTA). “암호자산에 관한 세무처리”, (최종 검색일 : 2022.5.3.)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shotoku/kaku-teishinkokukankei/kasoutuka>>

87) 일본 「소득세법(所得税法)」 제35조제1항

88)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하기 위해 기타소득의 하나로 가상자산소득을 규정하였음(「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89) 일본 국세청(NTA), “암호자산에 관한 세무처리지침”, p.10, 2021. 12. 22. (최종 검색일 : 2022.5.3.)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pdf/virtual_currency_faq_03.pdf>

사업상 수행하여 취득한 암호자산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암호자산의 하드포크로 새로운 암호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에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향후 이를 양도하면 양도로 발생한 소득(취득가액은 0으로 본다)을 잡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데, 이는 하드포크 시점에 새로 취득한 암호자산의 거래 시세가 존재하지 않아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⁹⁰⁾ 에어드랍으로 취득한 암호자산 역시 취득시 그 암호자산의 시가가 존재하면 취득한 때 과세하고, 시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를 양도할 때 과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암호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암호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 종합과세 대상인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⁹¹⁾ 당해 연도 초과손실의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표 8 | 일본 2022년 종합소득세율

(단위: 엔)

| 세율 | 과세표준 | 누진공제 |
|-----|-------------------------|-----------|
| 5% | 1,950,000 이하 | 0 |
| 10% | 1,950,001 ~ 3,300,000 | 97,500 |
| 20% | 3,300,001 ~ 6,950,000 | 427,500 |
| 23% | 6,950,001 ~ 9,000,000 | 636,000 |
| 33% | 9,000,001 ~ 18,000,000 | 1,536,000 |
| 40% | 18,000,001 ~ 40,000,000 | 2,796,000 |
| 45% | 40,000,001 이상 | 4,796,000 |

※ 주: 1. 소득세액에 대하여 2.1%의 부흥특별소득세(復興特別所得稅)가 추가로 과세됨(2013년~2037년 적용)

2. 기초공제는 합계소득금액이 2,400만엔 이하이면 48만엔, 2,400만엔 초과 2,450만엔 이하이면 32만엔, 2,450만엔 초과 2,500만엔 이하이면 16만엔이며, 2,500만엔 초과이면 기초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자료: 일본 「소득세법(所得稅法)」 제89조제1항

한편 일본은 주식, 채권, 펀드 등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분리과세⁹²⁾한다(참고로 소득할(所得割) 주민세 5% 및 부흥특별소득세 2.1%를 함께 과세하여 총 20.315%가 적용된다). 주식 등(상장주식, 채권, 펀드) 양도로 발생한 손실은 주식 등 양도소득 및 주식 등과 관련된 배당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고 초과손실을 3년 동안 이월공제할 수 있지만, 상장주식 등과 일반주식 등(비상장주식) 간의 손익통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⁹³⁾

90) 일본 국세청(NTA), “암호자산에 관한 세무처리지침”, p.9, 2021. 12. 22. (최종 검색일 : 2022.5.3.)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pdf/virtual_currency_faq_03.pdf>

91) 일본 「소득세법(所得稅法)」 제69조

92) 일본의 신고분리과세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분류과세 체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홍범교·구문정·홍성희, 「OECD 회원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75, 2016.)

93) 일본 국세청(NTA), “No.1465 주식등의 양도손실의 처리”, (최종 검색일 : 2022.5.3.)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65.htm>>

선물(先物) 등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잡소득에 해당하며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15%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한다(주식 등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소득할(所得割) 주민세 5% 및 부흥 특별소득세 2.1%를 함께 과세하여 총 20.315%가 적용된다).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손실은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 잡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을 뿐 다른 잡소득과는 손익을 통산할 수 없으며, 초과손실은 3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⁹⁴⁾

IV. 시사점

1. 해외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시사점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법적성질에 대한 인식,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분류와 과세방식, 세율, 비과세 기준 및 가상자산소득을 주식 등 금융상품 양도소득과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지, 가상자산 손익을 금융상품 등 자본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가상자산 결손금의 이월공제가 가능한지를 비교·분석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9 |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비교

| 구분 | 법적성질 | 소득 분류 | 과세방식 | 세율 | 비과세 기준 | 금융상품 양도 소득과 차이 | 자본손익 통산 가부 | 결손금 이월공제 |
|------|-----------------|--------------------------------|--------------|---------------------|-------------------------------|----------------|-----------------|----------|
| 대한민국 | 무형자산 | 기타소득 | 분리과세 | 20% | 250만원 | 20%, 25% 분류과세 | × | × |
| 미국 | 자산 | 단기자본이득 ¹⁾ 장기자본이득 | 종합과세 분류과세 | 10%~37% 15%, 20% | -2) 41,675달러 ³⁾ | × | ○ ⁴⁾ | ○ |
| 영국 | 무형자산 | 자본이득 | 분류과세 | 10%, 20% | 12,300파운드 | × | ○ | ○ |
| 독일 | 금융상품 | 기타소득 | 종합과세 | 0%~45% | 1년 초과 보유, 600유로 미만 | 25% 분리과세 | × | ○ |
| 호주 | 자산 | 자본이득 ⁵⁾ | 종합과세 | 0%~45% | △ ⁶⁾ | × | ○ | ○ |
| 일본 | 지급결제수단, 금융상품 | 잡소득 | 종합과세 | 5%~45% | -7) | 15% 신고분리과세 | × | × |

※ 주: 1) 양도한 자산의 보유기간 1년을 기준으로 단기자본이득과 장기자본이득을 구분함
 2) 가상자산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며 개인별 공제액도 상이하므로 비과세 기준을 일괄적으로 명시하기 어려움
 3) 개인 및 부부별도는 41,675달러, 부부합산은 83,350달러, 세대주는 55,800달러 이하인 경우 비과세함
 4) 순자본손실을 연간 3,000달러(부부별도 신고의 경우 1,500달러) 한도로 경상소득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5)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자본이득은 50%를 공제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만 자본이득세를 과세함
 6) 1만 호주달러 이하로 취득한 가상자산이 사적용도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7) 2,000만엔 이하의 급여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금액이 원천징수되거나 연말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암호자산 거래로 발생한 잡소득 등의 금액이 20만엔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됨(일본 「소득세법(所得稅法)」 제121조)
 ※ 자료: 각국의 법령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94) 일본 국세청(NTA), "No.1522 선물거래 관련 잡소득 등의 과세특례", (최종 검색일 : 2022.5.3.)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522.htm>>

위 주요국들은 공통적으로 가상자산의 자산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법적성질을 무형자산, 금융상품 등으로 달리 인식하고 있다. 가상자산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의 분류는 해당 국가의 과세 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는 가상자산소득을 자본이득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은 가상자산소득을 일반적인 자본이득과 상이하게 기타소득 및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미국, 영국, 호주는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보아 자본이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가상자산 손익을 다른 자본손익과 통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결손금 역시 순자본손실과 마찬가지로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주식 등 금융상품 양도로 인한 자본자산소득에 대하여 2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데,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0%~45%의 세율로 종합과세하면서도 가상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1년 이하라도 600유로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기준이 자본자산소득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가상자산 결손금을 이월공제하거나 직전 연도로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은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손익을 자본손익과 통산할 수 없고, 가상자산 결손금의 이월공제 역시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식 등 금융상품 양도소득에 대하여 1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지만, 가상자산 소득에 대하여는 5%~45%의 세율로 종합과세하므로 가상자산소득을 금융상품 양도소득에 비해 중과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고, 가상자산 결손금의 이월공제도 불가능한 점에서 일본과 유사하지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세율(20%)을 금융투자소득과 유사한 수준(20%, 25%)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처럼 가상자산소득을 중과세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의 채굴, 하드포크, 에어드랍에 대한 과세처리에 관하여 아직 명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는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가상자산을 채굴하여 취득한 경우 이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시점에 과세하는 방안과 취득시에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였을 때 과세하는 방안이 있는데, 미국, 영국, 일본은 취득시, 독일, 호주는 처분시 각 과세하고 있다.⁹⁵⁾

하드포크로 새로운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취득시 과세하는 방안,

95) OECD, *Taxing Virtual Currencies: An Overview of Tax Treatments and Emerging Tax Policy Issues*, pp.23~24, 2020.

취득시가 아닌 처분시 과세하는 방안, 가상자산의 사용 목적이 투자 또는 사업활동인지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과세하는 방안이 있는데, 미국은 취득시 과세하고, 영국과 일본은 처분시 과세하며, 호주는 투자 목적이면 처분시, 사업활동 목적이면 취득시 각 과세하고 있다.⁹⁶⁾ 에어드랍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은 에어드랍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그 가상자산의 시가에 따라 과세하고 있다.

2.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전 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무(트래블 룰)의 본격적인 시행,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자료 제출의무,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의무를 규정하였는바,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적으로 과세하므로 과세형평상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도 2023년부터 과세할 필요성이 크다.⁹⁷⁾

현재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이유는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을 원칙적으로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행 과세체계상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이라는 이유로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주로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와 부합하지 않으며,⁹⁸⁾ 회계기준상 자산 분류와 세법상 소득 구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⁹⁹⁾ 오히려 가상자산은 투자를 위해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대상이라는 경제적 성격을 고려할 때 주식과 유사하지만 그 성격이 다른 기타의 금융자산으로서 신종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¹⁰⁰⁾ 가상자산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지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것이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결과로 실현된 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타소득보다는 양도소득에 가깝다는 주장이 있다.¹⁰¹⁾

가상자산소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

96) Ibid. pp.43~44

97) 만약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유예되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늦춰지면, 과세형평상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도 유예하여 금융투자 소득세 전면과세와 함께 시행될 필요성이 있음

98) 이경근, 「2022년 가상자산과세, 이대로 문제 없나?」, 한국조세정책학회 자료집 토론문 3, p.30, 2021. 11.

99) 오문성, 「2022년 가상자산과세, 이대로 문제 없나?」, 한국조세정책학회 자료집 발제문, p.14, 2021. 11.

100) 오문성, 「암호자산(crypto-assets)의 합리적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5권 제4호, p.205, 2020.

101) 위의 글, pp.218~219

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기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등 양도소득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둘째, 가상자산 역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투자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변동성 역시 상당하여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기에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가상자산의 자산성을 인정하여 현재 가상자산의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양도차손에 대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¹⁰²⁾ 넷째, 소득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담세력은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소득에 있는데, 가상자산과 주식 등 금융상품은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의 투자 대상이면서 증개 매매에 의해 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다른 자산에 비해 가격변동성이 크고 빈번하게 거래가 이뤄지는 등 경제적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 양도손익과 금융상품 양도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도록 하여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담세력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개인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은 조세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며, 오히려 이는 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투자자 보호 제도 등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¹⁰³⁾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가상자산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각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존재한다. 일곱째, 개인들이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거래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대부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지급될 것이므로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반기별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이행된다는 점에서 신고납부방식보다 납세자의 편의가 제고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징세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의 기본공제는 250만원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 관련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 5천만원은 개인투자자의 투자 지원과 국내기업의 자본확충 및 조달을 위한 투자금 유입,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안착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며,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므로 국내 주식 이외의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02) 오문성, 「2022년 가상자산과세, 이대로 문제 없나?」, 한국조세정책학회 자료집 발제문, p.14, 2021. 11.

10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8호

참고문헌

- * 김갑래,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6.
- * 김무열, 「독일의 자본자산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조세제도와 시사점」, 조세학술논집 제36집 제2호, 2020.
- * 신상화·홍성희·정훈, 「암호화폐 과세제도 및 과세인프라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 오문성, 「암호자산(crypto-assets)의 합리적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5권 제4호, 2020.
- * 이상엽·송은주·서동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현황 및 쟁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 최정희, 「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법학논집 제25권 제2호, 2020.
- * 한국조세정책학회, 「2022년 가상자산과세, 이대로 문제 없나?」, 제19차 조세정책 세미나 자료집, 2021.
- * 홍범교·구문정·홍성희, 「OECD 회원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개최 -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 2017.9.4.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결과」, 2021.12.24.
-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2022.04.28. 기준) (최종 검색일 : 2022.5.3.) <<https://www.kofiu.go.kr/kor/notification/notice.do>>
-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보도자료, 「'21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2.3.2.
-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보도자료, 「3.25일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이 시행됩니다.」, 2022.3.25.
- * 한국회계기준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의 분류」, K-IFRS 질의회신 요약(2019-I-KQA017), 2019.12.31.
- * OECD, *Taxing Virtual Currencies: An Overview of Tax Treatments and Emerging Tax Policy Issues*, 2020.
- * The Law Library of Congress, Global Legal Research Directorate, *Regulation of Cryptocurrency Around the World: November 2021 Update*, 2021.
- * The Law Library of Congress, Global Legal Research Directorate, *Taxation of Cryptocurrency Block Rewards in Selected Jurisdictions*, 2021.
- * The Law Library of Congress, Global Legal Research Directorate, *Regulation of Cryptocurrency Around the World*, 2018.

R E P O R T · L I S T

NARS 현안분석 발간 일람

| 호수 | 제목 | 발간일 | 집필진 |
|-------|--|-------------|------------|
| 제248호 |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상의 쟁점과 과제 | 2022.5.3. | 김규호 |
| 제247호 | 초·중·고교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 | 2022.4.28. | 이덕난 유지연 |
| 제246호 | 인체유래 폐기물 재활용 쟁점과 과제 | 2022.4.6. | 김주경 김경민 |
| 제245호 | 코로나19 시기의 가족 돌봄 팬데믹 상황에서의 일·생활 균형의 조건과 과제 | 2022.3.10. | 허민숙 |
| 제244호 | 미일안보협력 사례로 본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정책 | 2022.3.8. | 김도희 |
| 제243호 | 성폭력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 특례규정 위헌결정과 입법개선과제 | 2022.2.28. | 김선화 박혜림 |
| 제242호 | 해외 영 케어러(young carer)지원 제도와 시사점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및 고립 예방을 위한 과제 | 2022.2.22. | 허민숙 |
| 제241호 |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이행 강화 방안: 가해자 GPS 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 | 2022.1.28. | 허민숙 |
| 제240호 | 도심지 지반침하의 원인과 대책 | 2022.1.13. | 김진수 |
| 제239호 | 영국과 일본의 법안사전심사제 현황과 시사점 | 2021.12.31. | 최정인 김유정 |
| 제238호 | 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감정) 개선과제 | 2021.12.31. | 박재영 |
| 제237호 | 디지털 시대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 | 2021.12.31. | 최정민 |
| 제236호 |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쟁점 및 과제 ① -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개관 | 2021.12.31. | 김도희 |
| 제235호 | 민간자격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 2021.12.30. | 조인식 |
| 제234호 |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활동과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의 시사점 | 2021.12.30. | 임재범 |



NARS 현안분석 제249호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02-6788-4510

이 보고서 내용은 국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입니다.

발간등록번호 31-9735023-001616-14

ISSN 2586-565X

